특허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특허출원), 방식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되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권 1
1. 특허제도 일반 4
1.1. 특허제도 개관 4
1.1.1. 특허등록의 요건 4
1.1.2.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10
1.1.3. 특허등록의 지원 12
2.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5
2.1. 출원 전 확인사항 15
2.1.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5
2.1.2. 선행기술 정보검색 16
2.2. 특허출원 절차 17
2.2.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17
2.2.2. 특허출원서 작성 20
2.2.3. 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22
2.2.4. 특허의 국제출원 26
2.3. 특허 심사 알아보기 29
2.3.1. 특허심사 절차 29
2.4. 특허등록 신청하기 37
2.4.1. 특허권의 등록 37
2.4.2. 변동등록 40
2.5. 특허료 등 44
2.5.1. 특허료 등의 납부 44
3. 특허권의 분쟁 48
3.1. 특허권의 침해 48
3.1.1. 특허권 침해 구제 등 48
3.2. 특허심판제도 50
3.2.1. 특허심판 개관 50
3.2.2. 특허심판 진행 55

1. 특허제도 일반

1.1. 특허제도 개관

1.1.1. 특허등록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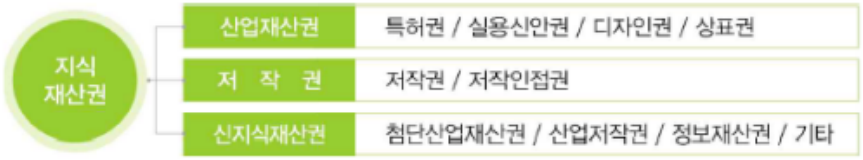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지식재산의 개념

-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쪽>

> ※ 이 콘텐츠는 산업재산권의 권리 가운데 **특허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쪽)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5쪽)

▪ 산업재산권의 개념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2쪽).

▹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2쪽).

▹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2쪽).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을 말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5쪽).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참고).

▹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지식재산처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지식재산처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87조 참고).

▪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대상(식품)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A.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8쪽).

특허등록의 대상(영업방법)

Q.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나요?
A.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을 말합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으로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 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시켜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40쪽 참조).

특허등록의 대상(공지발명)

Q.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41쪽 참조).

「특허법」의 기본원칙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1항).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2항).

▪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특허법」 제36조제3항).

도달주의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 포함)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28조제1항).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8조제2항 본문).

-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3항).

▪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28조제2항 단서).

▪ 우편물의 지연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에 따른 지연의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본문).

서면·양식주의 및 국어주의

▪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영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 「특허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영어로 적은 위 명세서 및 도면은 제외)
  - √ 위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 이 경우 전자문서는 「특허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2항).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특허법」 제45조제1항 본문).
-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특허법 시행령」 제6조).
  -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특허요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3쪽).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또한 산업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과 발명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3쪽).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2항).

※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3쪽).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주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로 제출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공지예외주장 제도)

▪ 「특허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1만8천원,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2만원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2).

▹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는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 이처럼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1조제3항).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Q.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 전단).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1.1.2.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의 효력발생

특허권의 설정등록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특허법」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 말함)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의 전용권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4조제1항 단서).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04쪽).

▪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특허법」 제94조제2항).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특허법」 제97조).

특허권 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6조제1항).

-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1조제1항).

-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1조제2항).

-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1.1.3. 특허등록의 지원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선행기술 조사

▪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정책/업무-지원시책>에서 지식재산처의 각종 시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 이라 함)의 방지에 관한 상담

√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p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무료변리의 범위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의 이용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pa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2.1. 출원 전 확인사항

2.1.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자의 특허등록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36조제5항),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공동발명자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특허법」 제33조제2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4조),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권리의 이전

-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1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3항).

-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8조제1항).

-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4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5항).

▪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6항).

▹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6항 및 제38조제7항).

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

2.1.2. 선행기술 정보검색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방법

선행기술 정보

▪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28쪽).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 다음의 한국특허정보원(KIPI) 및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웹주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scienceon.kisti.re.kr	
윕스(WIPS)	http://www.wipscorp.com	유료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www.wisdomain.com	
마크프로	http://www.markpro.co.kr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29쪽>

지식재산처 도서관 등을 이용한 정보검색

▪ 지식재산처 도서관(http://library.kipo.go.kr)을 통해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고, 원문복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02-3458-2200)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pms.ripc.org) 자료열람실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 구성과 권리번호의 의미

▪ 국내 특허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등록 및 공고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http://kipris.or.kr) 참조].

번호	내용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출원번호	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공개번호	출원 이후 출원공개제도(출원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후 자동 공개)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에 따른 공개 시 부여되는 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등록번호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부여되는 번호	2자리	-	7자리
공고번호	과거 특허공보제도에 의해 심사결과가 등록인 경우 등록공보 발행 시 부여되는 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특허의 권리번호는 "10"이며, 참고로 실용신안의 권리번호는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http://kipris.or.kr) 참조].

2.2. 특허출원 절차

2.2.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인터넷을 통한 출원

특허로 홈페이지

▪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지식재산처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사전절차

특허고객번호 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
-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문서 이용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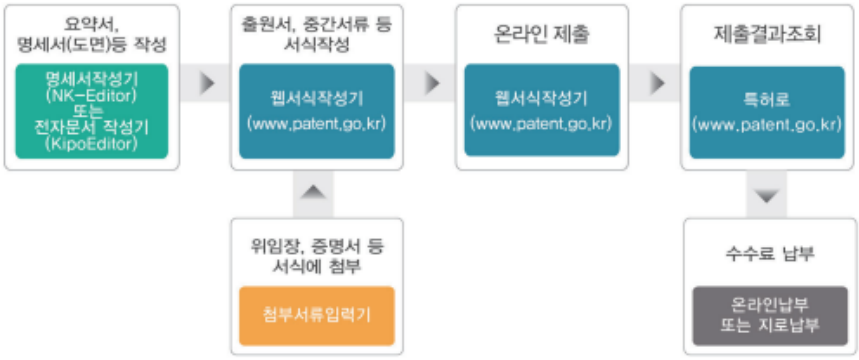
▪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인증서발급

▪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온라인 출원의 절차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및 주중공휴일은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가능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36쪽).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특허출원서의 준비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명세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통

- 요약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통
- 도면(「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37쪽).

2.2.2.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의 제출

특허출원서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명세서

▪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설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 발명의 명칭
  - √ 기술분야(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도면의 간단한 설명(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 청구범위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6항).

※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0쪽 참조).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세부적인 방법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제8항).

요약서

▪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고).

▪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3조).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출원에 필요한 서류(『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39쪽)

구분		특허
전자문서출원	ON-LINE	1. 출원서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그 밖의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 출원서류 작성예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참고자료-특허출원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출원자격

▪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출원자격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지식재산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0쪽 참조).

출원일자

▪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전단).

2.2.3. 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출원보정

보정의 종류

▪ 특허출원절차의 보정(방식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6조).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 「특허법」 제6조의 대리권의 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보정(실체보정)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 ※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4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의 허용범위

▪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의 각하

▪ "보정각하"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단서).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2 참조)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3 참조)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특허법」 제67조의2 참조)

▪ 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2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분할출원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44쪽).

▪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40쪽).

▪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 분할출원이 「특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출원의 요건

▪ 적법한 분할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본문 참조).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8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본문).

√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의 기간

√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3항).

▹ 원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본문).

√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특허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또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단서).

분할출원의 흐름도



<출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특허와 실용신안 간 변경출원 신청

변경출원신청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 변경출원을 신청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53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본문).

변경출원의 기간

-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까지 변경출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변경출원의 요건

- 적법한 변경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이 지난 경우에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 원출원이 외국어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참조).

  -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3조제3항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3항 참조).

변경출원 흐름도



<출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2.2.4. 특허의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PCT소개-PCT국제출원제도 개요).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PCT소개-PCT국제출원제도 개요).

> ※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지식재산제도-P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개념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8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26쪽).

해외 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도표): 지식재산처 자료



<출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마당-PCT소개-PCT국제출원제도개요>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및 특징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출처: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49쪽>.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92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국제출원서의 준비

▪ 국제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

▪ 국제출원을 위한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193조제2항).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 위에 따라 지정된 지정국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특허법」 제193조제2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나요?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
(출처: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329쪽).

국제출원일의 인정

▪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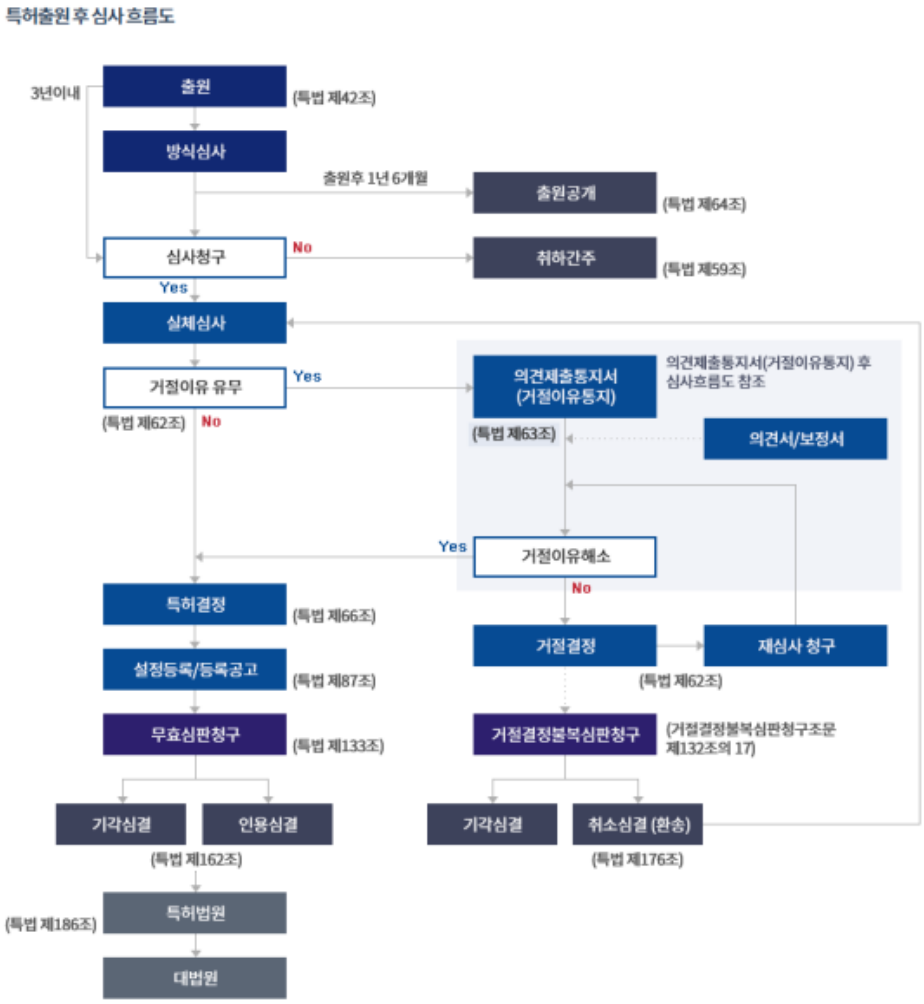
-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192조)
-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2.3. 특허 심사 알아보기

2.3.1. 특허심사 절차

특허심사 절차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방식심사

▪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특허법」 제57조제1항).

▪ 출원서를 받은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제1항 본문).

▪ 이러한 방식심사의 결과 해당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해야 합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제3항).

특허심사의 이유

Q. 심사란 무엇인가요?

A. 발명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57조에서는 심사관에 의하여 출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사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2023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177쪽>

방식심사

Q.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나요?

A.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특허법」 제16조).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방식심사나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 출원무효나 반려처분 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 처분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무효나 반려처분 된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4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93~94쪽 참조>

출원공개

▪ 출원공개의 시기

▹ 지식재산처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 조기공개의 신청과 취하

▹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함)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러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출원공개의 효과

▸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2항).

√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3항).

√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특허법」 제65조제5항 및 「민법」 제766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4항).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1항).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2항).

▪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우선심사

▪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우선심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해당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함)
-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우선심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2조).

- 「특허법」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약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 「특허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제42조제8항,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 심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 재심사청구 요건(『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72쪽 참조)

· 특허결정되거나 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재심사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반려합니다.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입니다.

·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특허결정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

▪ 특허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직권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1항 후단).
-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2항).
-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 특허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4항).
- 직권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6항).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함)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지식재산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특허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 특허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 특허료의 상세한 안내는 지식재산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특허등록 신청하기

2.4.1. 특허권의 등록

특허권 등록

설정등록

▪ 지식재산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21쪽 및 「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참조).

▪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함)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특허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함)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분류기호
9.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10.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함)
11.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12.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13.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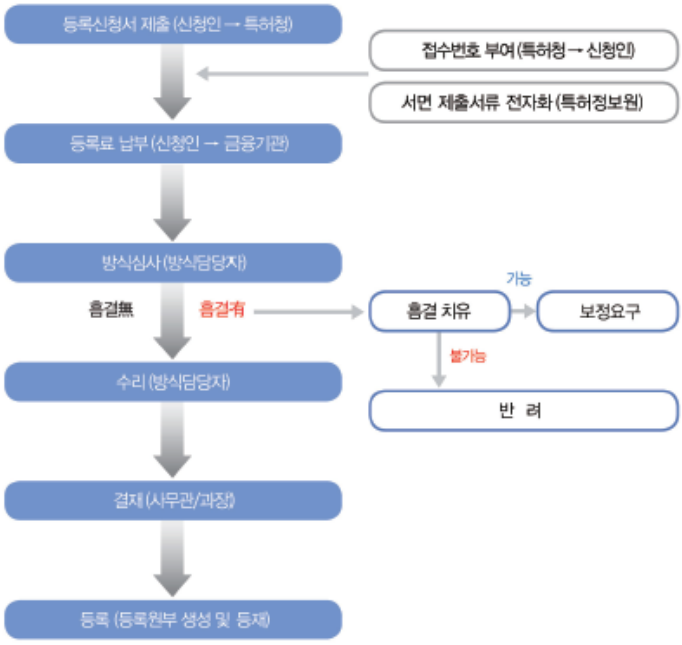
14.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5.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6. 그 밖에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사항

▪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해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4항).

▪ 설정등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0쪽)

연차등록료 납부

▪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본문).

▪ 이 경우 특허증을 전자문로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단서).

> ※ 지식재산처의 연차등록 안내제도를 이용하면 연차등록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산업재산권 등록제도-등록제도 소개-연차등록 안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의 납부일

Q.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등록료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출처: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22쪽>

연차등록료 납부시 연차수 계산법

Q. 연차등록료 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연차료 납부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 7. 1.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26쪽).

특허료의 보전제도

▪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5쪽).

▪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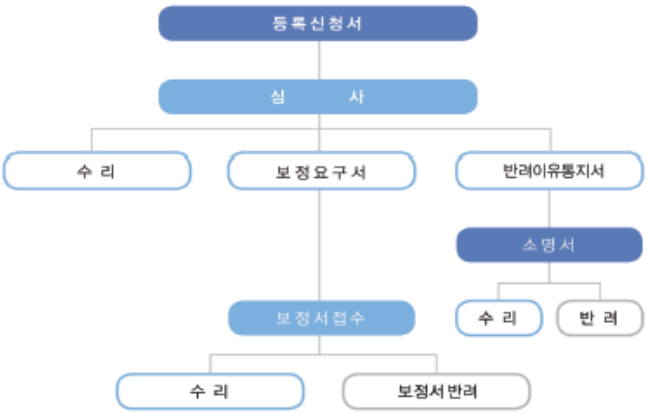
▪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9항 단서).

등록보정

"등록보정"의 개념

▪ "등록보정"이란 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흠결이 치유되면 등록신청서 제출 시로 등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절차 흐름도(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자료)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100쪽)

※ 등록신청시 주요 흠결 사유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변동등록>

√ 등록의무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예: 공동권리자가 각자 납부한 경우)

※ 유의사항: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납부

√ 연차등록료를 전년도에 납부했던 계좌로 잘못 납부

※ 유의사항: 계좌번호는 일회성이므로 반드시 납부할 계좌를 정확히 확인해 납부해야 함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102쪽>

2.4.2. 변동등록

권리이전 등록

권리이전의 등록

▪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1항 참조).

▪ 특허권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항).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7쪽).

▪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100조제2항).

▪ 전용실시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3항).

√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4항).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1항).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습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7쪽).

▪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3항).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합니다(「특허법」 제102조제4항).

▪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5항).

▪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

▹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6항).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강제실시제도)

▪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제도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입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산업재산분야 제도-강제실시제도 참고].

▪ 통상실시권 재정의 요건

▹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본문).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다음의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함)

√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위의 4.의 경우에는 협의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단서).

▹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위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2항).

▪ 통상실시권 재정의 설정

▹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3항).

법정실시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03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04조제1항).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1.부터 4. 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특허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04조제2항).

▪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함)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22조).

말소등록

특허권 등의 포기

▪ "말소등록"이란 특허권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7쪽).

▪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특허법」 제120조).

> ※ 말소등록신청에 관한 내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1544-8080)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권설정

특허권에 대한 질권설정

▪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21조).

▪ 질권은 이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23조).

소멸권리의 회복

소멸권리회복제도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전단).

▹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후단).

▪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2.5. 특허료 등

2.5.1. 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특허료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 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

▪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82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참고).

▸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그 밖에 특허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 관련 수수료와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에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납부대상에 관하여서는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조제3항제6호).

특허료 등의 감면

특허료, 등록표 및 수수료의 감면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과 반환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단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39조제2호·제17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함)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 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반환

▪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함)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특허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 √ 「특허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함)
  - √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 √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 거절이유통지(「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특허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함)
-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2항).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 2022. 10. 18.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특허법」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개정) 부칙 제2조].

3. 특허권의 분쟁

3.1. 특허권의 침해

3.1.1. 특허권 침해 구제 등

특허출원자 및 특허권자 보호

특허출원인 보호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86~287쪽).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보호

▪특허권 침해 시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형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20. 10. 20.이후 범죄부터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수사기관의 직권수사도 가능)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허법」 제225조 및 제230조).

▹행정적 구제수단: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1670-9779

<출처: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80쪽>

특허권 침해 유형

직접침해 행위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특허법」 제98조 참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참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특허법」 제98조 참고).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27조).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침해의 시기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1항).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2항).
  -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용회복청구권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1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특허권 침해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7조제1항).

허위표시의 죄

▪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8조).

거짓행위의 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9조).

3.2. 특허심판제도

3.2.1. 특허심판 개관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특허심판의 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제도의 의의

▪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결정 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처의 권리보호체계는 지식재산처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前審)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 절차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 특허심판의 개념

√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을최종심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을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종류

√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심판은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된 특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서 등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합니다.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 시 즉시 부여됩니다.

• 특허심판의 비용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관이 심결 또는 결정으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하락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출처: 『2025 지식재산고객 상담사례집』, 지식재산처, 244~245쪽>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출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

특허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 거절 결정 불복심판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 정정심판

▹ 특허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2항).

√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함)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합니다(「특허법」 제136조제3항).

▹ 그러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4항).

당사자계 심판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아래 2.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1.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9조(특허요건),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선출원), 제42조제3항제1호(발명의 설명기재) 또는 제42조제4항(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을 위반한 경우

2.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를 위반한 경우 (다만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

3.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특허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2항).

> **※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정정의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특허법」 제136조제1항)

√ 정정심판절차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특허법」 제136조제3항)

√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특허법」 제136조제4항)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잘못기재의 정정의 경우에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특허법」 제136조제5항)

▹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1항).

▹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2항).

▹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1항).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됩니다(「특허법」 제138조제2항).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3항).

▹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8조제4항).

▹ 「특허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5항).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4조제1항).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법」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4조제2항).

√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특허법」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법」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4조제4항 본문).

▹ 다만, 연장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4조제4항 단서).

√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

▹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4조제5항).

3.2.2. 특허심판 진행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특허심판의 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심리순위

▪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우선심판 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이 있는 다음의 사건(1.부터 3., 16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단서).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3.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5.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6.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7.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
8.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0. 지식재산처가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2.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정
14.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 신속처리 신청, 임시허가 신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

√ 규제 신속확인 신청, 규제특례 신청,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6 및 제11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24조)

√ 규제확인 요청, 실증특례 신청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 제86조 및 제90조)

√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15.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16.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심사 및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호, 제7호, 제9호에 따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신속심판

▹ 위 우선심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당사자가 신속심판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한 다음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신속심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의 청구 및 심판비용

특허심판청구 절차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비용

▪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심판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청구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정정심판 :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 확인심판 :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의 특허 번호 및 명칭과 통상실시권 설정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특허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원일,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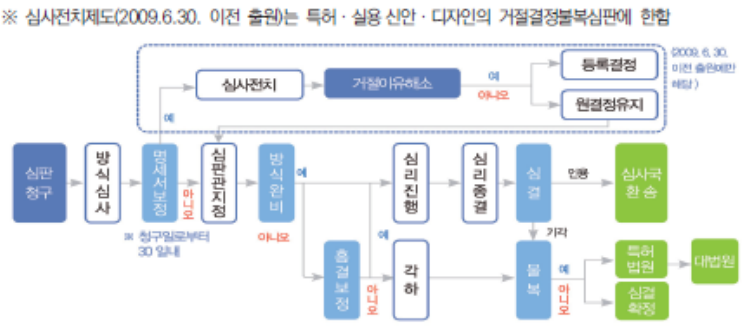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특허법」 제140조제2항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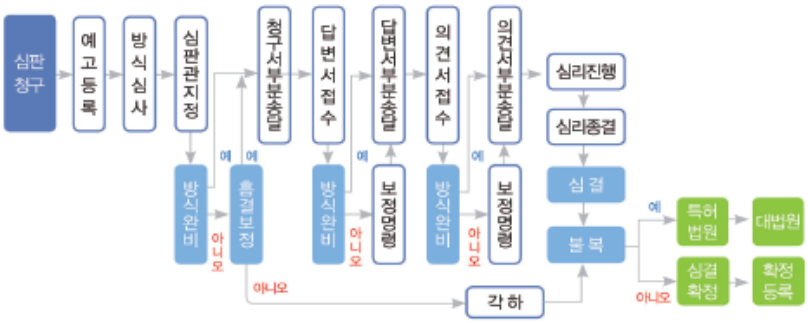
※ “방식심사”는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69쪽 참고).

결정계 심판 절차도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113쪽>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출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113쪽>

※ 특허심판의 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의 <특허심판제도 안내-특허심판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1항).
-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2항).
-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위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3항).

심판판결에의 불복 및 재심청구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 위의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 다음의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2항).
  - 당사자
  - 참가인
  -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7조).
-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재심의 청구

-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8조제1항).

재심의 사유

-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 제3자에 의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함

재심청구 기간

-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1항).
-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2항).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0조제3항).
-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4항).
- 다만,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0조제5항).